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임명 시부터 기산〉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55호, 제2203056호, 제2203057호,
제2203058호, 제2203059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II.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8. 21.
- 3) 회부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2.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8. 21.
- 3) 회부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6항).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8. 21.
- 3) 회부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8. 21.
- 3) 회부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8. 21.
- 3) 회부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II. 검토의견

□ 개정안¹⁾은 각 거래분야 분쟁조정협의회²⁾에 결원이 생겨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해당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⑥ (생략)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생략)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 -----새로 시작한 다. ⑧ (현행과 같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 ⑩ (생략)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 -----새로 시작한 다. ⑦ ~ ⑩ (현행과 같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⑥ (생략)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u>새로 시작한다.</u> ⑧ ~ ⑩ (현행과 같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 ⑨ (생략)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새로 시작한다.</u> ⑦ ~ ⑨ (현행과 같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⑥ <u>위원중</u>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 ⑨ (생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위원 중</u> ----- <u>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u> ----- ----- <u>새로 시작한다.</u> ⑦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내에서의 모든 위원 임기 종료일이 동일하고, 임기 종료일에 이르면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함.

[표 1] 분쟁조정협의회별 위원 임기 현황('24.10월 기준)

분쟁조정협의회명 (위원 정원 / 임기)	직위 (현 위원수)	현 위원 임기	보궐위원 임기
공정거래 (9명 / 3년)*	위원장·위원 (총 3명)	2024. 2. 9. ~ 2027. 2. 8.	전임자의 남은 임기
	위원(6명)	2023. 2.17. ~ 2026. 2.16.	
하도급 (9명 / 3년)*	위원장·위원 (총 9명)	2023. 7. 1. ~ 2025. 6.30.	규정 없음
가맹사업거래 (9명 / 3년)	위원장·위원 (총 9명)	2023.11. 9. ~ 2026.11. 8.	전임자의 잔임기간
대규모유통업거래 (9명 / 3년)	위원장·위원 (총 9명)	2024. 3. 1. ~ 2027. 2.28.	전임자의 남은 임기
대리점 (9명 / 3년)	위원장·위원 (총 9명)	2022.12.23. ~ 2025.12.22.	전임자의 남은 임기
약관 (9명 / 3년)	위원장·위원 (총 9명)	2024. 9.12. ~ 2027. 9.11.	전임자의 남은 임기

* 법 개정(23.8.8. 개정, 24.2.9. 시행)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가 7명→9명(상임위원이자 위원장인 1명과 추가된 조정위원 2명을 시행일에 맞춰 새로 임명·위촉하여 나머지 6명과 임기가 상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2년→3년으로 변경(시행일 이후 새로 구성시부터 적용 예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05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056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057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05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059호)」
- 2) 각 거래분야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 공정거래법 관련 :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 하도급법 관련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 가맹사업법 관련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 대리점법 관련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 약관 관련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 보궐위원의 임기는 분쟁조정협의회 제도의 최초 도입 시점³⁾부터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운영되어 왔는데, 이는 모든 위원들의 임기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임.

[표 2] 2010년~현재까지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별 보궐위원 위촉 현황

구분	공정거래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약관
위촉된 보궐 위원 수	2명	0명	6명	6명	3명	3명
위촉된 보궐위원 각각의 임기	1년 6개월, 6개월	-	4개월 1년 5개월 1년 6개월 1년 7개월 9개월 2년 7개월	2년 4개월, 1년 10개월, 10개월, 2년 5개월, 1년 7개월	11개월, 1년 3개월, 2년 5개월	1년 11개월, 1년 1개월, 1년 5개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 각 거래분야 분쟁조정협의회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분쟁조정 건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협의회 위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연속성 있게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분쟁조정협의회 전체 위원 수는 도입 초기 16명(공정·가맹분야)에서 2024년 현재 6개 분과 52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정 접수 건수도 2008년 520건에서 2023년 3,481건으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원들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어 다수의 위

3)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원을 한꺼번에 임명·위촉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보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 보궐위원 임기 규정과 관련해서 ①보궐위원 규정을 두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방식, ②보궐위원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위원에게 동일한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이 있으며, 위원회별 특성·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음.

<분쟁조정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관련 입법례>

구분	법률	보궐위원 임기 규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별도 규정 없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별도 규정 없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별도 규정 없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별도 규정 없음

-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⁴⁾.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새로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를 기존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기보다는 보궐위원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5

4)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3, p. 412